



# 「EU 보험경쟁법」의 변화와 수평적 협력협정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연구

- EU 보험경쟁법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이하 'EU 경쟁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근거하고 있음.
  - EU는 단일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동행위만을 인정하는 보험적용 제외제도(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이하 'IBER')를 1991년부터 운영하였음.
  - EU는 2017년 3월까지 공동으로 통계표 작성·위험보험료 산출·연구에 대한 정보교환, 그리고 특정 리스크의 공동인수풀 운영에 대해 적용제외로 인정하였음.
  
- EU는 2017년 3월 이후 IBER을 명시적인 규정(regulation)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전환하였음.
  - EU는 공동 계약조건 사용 등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평적 협력협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음.
  - EU는 2017년 3월 이후 2개 공동행위에 대한 예시를 가이드라인에 제공할 예정임.
  - EU는 Solvency II와 공정가치부채평가에 필요한 할인율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활용에 대한 예시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58조(적용제외)에 의거, 「보험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의 위험보험료 산출, 공동인수협정만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로 되어 있음.
  - 향후 공정가치부채평가제도와 자체모형사용이 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보험회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정보가 필요하며 재무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됨.
  
- 경쟁당국은 공정가치부채평가 등에 필요한 변수 연구나 작성에 대한 공동협력과 정보교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명시적인 적용제외규정에 추가하여 EU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의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개별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의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면서 특정행위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1. 검토배경



- 유럽연합(이하 'EU')은 1993년부터 단일 보험시장 내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개별국의 공동행위를 없애고 최소한 공동행위만을 인정하는 보험적용제외제도(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이하 'IBER')를 운영하여 왔음.
  - 「EU 경쟁법」상 보험회사의 경쟁법 적용제외 사항(block exemptions)은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일몰규정으로 운영하였음.
  - 201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IBER 대상은 공동으로 위험보험료 산출(사망률표 등의 각종 발생률표 작성 포함), 특정 리스크의 공동인수-풀(원보험 및 재보험) 등이었음.
- EU는 IBER의 존속여부를 위해 2014년부터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영향 분석을 검토한 결과, 적용제외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수평적 협력협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3월 이후 수평적 협력의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위험보험료 산출과 공동인수 등 두 개의 공동행위, 그리고 Solvency II 시행에 필요한 변수 사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2001년 「카르텔일괄정리법」<sup>1)</sup> 시행 이후 보험산업 공동행위는 「보험업법」에서 인정<sup>2)</sup>하고 있는 요율산출기관의 참조순보험료 산출 및 제공(제176조 제3항), 공동인수협정(제125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EU 보험경쟁법규 개정 경과사항 및 가이드라인 활용으로 전환하는 배경 및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보험산업 경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험료율산출기관이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순보험료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료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변경하고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2. EU의 2017년 3월 이후 IBER 적용방안<sup>3)</sup>



- EU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이하 ‘EU 경쟁법’)」<sup>4)</sup> 제101조 및 제102조<sup>5)</sup>에 근거하여 보험경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EU 위원회(commission)는 EU 경쟁법 제101조 제3항의 적용제외인정사항에 대한 권한을 유럽의 회(council)로부터 위임받아 “산업별 적용제외제도(block exemption regulation)”를 1991년부터 운영하여 왔음.
  - 또한 위원회(commission)는 2001년부터 연구개발, 생산, 구입, 영업, 표준화 및 환경정책에 관한 협정에 대해 판단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평적 협력협정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 2001/C 3/02)”<sup>6)</sup>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각종 협정에 참가하는 사업자나 단체가 「EU 경쟁법」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EU의 보험적용제외제도(IBER)는 1991년 5월부터 1차 IBER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7년 3월까지 3번의 변화를 거쳐 4차 IBER까지 적용되었음(보험경쟁정책 변화의 주요내용은 <부록> 참조).
  - 2017년 3월까지 존속된 4차 IBER은 일정한 적용 요건<sup>7)</sup>을 충족하는 특정 리스크에 대한 공동인

<sup>3)</sup> European Commission(2016),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functioning of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ber\\_report\\_en.pdf](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ber_report_en.pdf).

<sup>4)</sup> EU 법규체계는 최상위법규인 조약을 기초법(primary law)으로 하며, 이에 관련되는 법(secondary law)으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으로 구성됨. 기초법은 구 유럽공동체조약(EC조약)에서 유럽연합조약(Treaty of the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이 있음. 지침(regulation)은 조약에 기초하여 작성된 법규로 가맹 국가는 이에 기초하여 국내법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지침은 발효일과 동시에 모든 가맹국에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규칙과 달리 특정국가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가맹국에 대해 EU가 요구하는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생명보험지침은 1차(79/267/EEC), 2차(90/619/EEC), 3차(92/96/EEC)가 있는 후 이를 통합한 지침(2002/83EC)이 있으며, 손해보험지침은 1차(73/239/EEC), 2차(88/357/EEC), 3차 지침(92/49/EEC)이 있음. 이외에도 보험종목별, 지급능력제도 등 감독 및 회계제도에 대한 지침도 다수 존재하며, 최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침은 Solvency II 지침(2009/138/EC)임.

<sup>5)</sup> 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설립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해당됨(그 전에는 제85조, 제86조이었음).

<sup>6)</sup> 현재는 개정된 가이드라인(2011/C 11/01)이 운영되고 있음.

<sup>7)</sup> 損害保險事業総合研究所(2010), 「欧米主要国における業務標準化等への共同の取り組みとその法的な位置付けについて」, pp. 13~16.

수풀(co(re)insurance pool)운영과 공동 자료편찬 및 통계표 작성·연구에 대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for joint compilations, tables and studies)임.

- 4차 IBER은 2017년 3월까지 운영하고 이후 존속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되었음.

〈표 1〉 EU 경쟁법의 보험적용제외제도(IBER) 변화

적용제외내용		변화시기		1차 IBER		2차 IBER		3차 IBER		4차 IBER	
		'91. 5~'92. 3	'92. 3~'03. 3	'03. 4~'10. 3	'10. 4~'17. 3						
적용 제외 사항	공동 위험보험료(common risk premium) 산출	○	○	○	적용 제외 요건 구체화	○	적용요건 (8개)				
	공동의 표준보험계약조건 및 모델	○	○	○		×					
	특정 리스크의 공동인수	○	○	○		○	적용요건 (7개)				
	손해사정처리	○	×	×		×					
	안전방재 및 보안장치 시험 및 인정	○	○	○		×					
	불량 리스크(aggravated risks)의 등록 및 정보교환	○	×	×		×					
해당 규정		EEC 1534/91	EEC 3932/92	EEC 358/2003	EU 267/201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6),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functioning of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pp. 2~6.

■ EU 위원회는 2017년 3월 4차 IBER의 폐지(non-renewal), 부분연장(partial renewal) 또는 재연장(renewal)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에 회원국가 경쟁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IBER의 존폐 시의 영향평가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공함과 더불어 공공<sup>8)</sup>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sup>9)</sup>하였음.
- 2016년에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sup>10)</sup>는 4차 IBER의 존속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음.

■ 동 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이 하고자 하는 특정 협력행위를 자체평가<sup>11)</sup>하여 경쟁법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8)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단체, 판매채널, 소비자단체, 경쟁법전문가, 정부기관, 연구자, 시민, 계약자 등.  
 9) European Commission(2014), Consultation on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10) European Commission(2016), 전제자료, p. 12.  
 11) 개별건의 자체평가와 판단은 첫째, 각종 협정이 「EU 경쟁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가맹국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와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며, 둘째,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상, 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상회하는 지 여부를 평가함.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를 제안하였음.

- EU 위원회는 2016년 Solvency II 시행으로 보험료 결정과 공정가치부채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 금리시나리오 등 다양한 변수의 공동 집적(compilation), 관련 통계표 작성 시 보험회사들의 협력과 연구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4차 IBER과 관련된 예시적인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유연한 대응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위원회는 2010년 공동의 표준보험계약조건 작성,<sup>12)</sup> 2011년 리스크 데이터의 배포(dissemination)<sup>13)</sup> 등을 경쟁촉진과 소비자편익 제고 사례로 예시한 바 있음.
- 반면, EU 위원회는 특정 유형의 위험에 대한 공동인수(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의 경우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sup>14)</sup>
  -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인수 필요성이 있지만 리스크의 변화로 동질위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관련 시장(relevant market)<sup>15)</sup>을 한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위원회는 풀을 통한 공동인수에 대해 2013년에 회원국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바 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음.<sup>16)</sup>
  - 향후 보험회사는 개별 건별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경쟁제한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제한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12) Example 11(공동의 표준보험계약 조건)은 보험회사의 상품다양화를 제한하기보다 보험소비자의 상품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여 보험회사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쟁촉진에 기여하고 또한 소비자단체가 약관작성에 참여하여 정보전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함. 다시 말해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제한성보다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경쟁법 제101조 제3항 기준을 충족(fulfill)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2011),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2011/C 11/01), p. 72.

13) European Commission(2016), Review of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Report to Parliament/Council in the functioning and future of the IBER, p. 11.

14) 원보험이든 재보험이든 풀로 인수하는 원수보험료 규모가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의 25%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리스크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15) 공동인수협정이 경쟁법 적용제외가 되기 위하여 동질 위험을 담보하는 시장전체에서 공동인수보험료가 차지하는 점유율(M/S)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하는 시장전체를 관련 시장이라 함; Ernst & Young(2013), Study on Co(re)insurance pools and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EU Commission, pp. 79~84.

16) Ernst & Young(2013), Study on Co(re)insurance pools and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EU Commission.

- EU 위원회는 4차 IBER이 연장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위원회는 조만간 두 개의 공동행위 인정사항에 대한 존폐 시의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임.
  - 또한 두 개의 IBER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추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3. 시사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보험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 검토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상 인정하는 공동행위는 참조순보험료 산출 및 제공, 공동인수협정임.
- 반면, EU의 경쟁정책은 보험회사들 간의 협력이나 협정행위를 시장에서 평가, 적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EU는 IBER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공동행위의 경쟁법 저촉여부와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공동협력이나 협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3월까지 존속되었던 두 개의 IBER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경쟁과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 간 또는 단체를 통한 공동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위원회는 2016년부터 시행된 Solvency II를 보험회사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변수의 추정 및 사용 등에 대한 공동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 경쟁정책도 시가평가회계제도와 경제적 가치 기준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수가 보험회사 경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공동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sup>17)</sup>
- 현재 보험업법상 인정하는 공동행위와 더불어 EU처럼 보험회사 간 수평적으로 협력이나 협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험회사들이나 단체의 자체적인 평가 및 판단에 따라 공동협력이나 협정이 인정될 수 있는 유연한 경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 부록. EU IBER의 변경경과 및 주요내용



■ EU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제101조 및 제102조<sup>18)</sup>에 근거하여 보험경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01조는 당사자가 사업자 간 혹은 사업자단체를 이용하여 협정, 결정, 협조적인 행위 등 반경쟁 협정(anti-competitive)을 하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규정함.
  - 공동행위가 가맹국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행위의 효과가 단일시장 내 경쟁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경우에 금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무효가 됨(동조 제1항 및 제2항).
- 제101조 제3항은 제101조의 공동행위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1조 제1항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동행위가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개선되고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행위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 가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해당 공동행위는 “최소한의 제한사항이 존재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금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02조는 특정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가맹국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991년 유럽의회(council)는 위원회(commission)에게 제101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점유율 제한(M/S thresholds), 특정 조건(specific conditions)을 정하도록 하였음 (EEC No 1534/91).<sup>19)</sup>

17) 이승준 외 3인(2014),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보고서, p. 76.

18) 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설립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해당됨(그전에는 제85조, 제86조이었음).

19) European Commission(2016), REVIEW OF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p. 5;

- 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산업별 적용제외제도(block exemption regulation)를 채택하게 되었음.
- 동 적용제도는 효과적인 경쟁감독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행정이 단순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EU 위원회는 아래 6개 사항에 대하여 보험의 경쟁법 적용제외제도(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를 1991년에 최초로 제정하였고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보완,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함.<sup>20)</sup>

- 공동으로 수집한 통계 또는 사고건수에 기초한 위험보험료(common risk premium tariff) 산출
- 공동의 표준보험계약 조건(common standard policy conditions) 작성
- 특정한 리스크에 대한 원보험 및 재보험 공동인수(common coverage by (re)insurers of certain types of risks)
- 손해사정(settlement of claims)
- 안전방재장치의 시험 및 인정(testing and acceptance of security devices)
- 적절한 기밀보호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불량 리스크(aggravated risks)의 등록 및 정보교환

■ EU 위원회는 1992년에 2개 행위를 제외하고, 2003년에 4개 행위에 대해 6가지 적용요건을 도입하였음.

- 1992년에는 손해사정처리와 불량 리스크의 등록과 정보교환 공동행위가 제외되었음.<sup>21)</sup>
- 2003년에는 IBER 적용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2010년 3월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sup>22)</sup>
  - 공동위험보험료, 확률표 및 연구에 대한 정보교환의 경우(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common risk premium tariffs based on collectively ascertained statistics or the number of claims), 특정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한 과거 자료에 기초한 평균 위험보험료 산정, 저축성 보험에 사용하는 사망률표(질병 및 취업불능의 발생확률표 포함)의 공동 작성 및 배포, 특정 리스크 혹은 리스크 구분별 장래 보험금지출의 발생빈도와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요소에 대한 연구와 다른 종류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the profitability

[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ber\\_event\\_report\\_presentation\\_en.pdf](http://ec.europa.eu/competition/sectors/financial_services/iber_event_report_presentation_en.pdf).

<sup>20)</sup> Council Regulation(EEC) No 1534/91 of 31 May 1991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1R1534>(2017. 4. 12).

<sup>21)</sup> Commission Regulation(EEC) No 3932/92 of 21 December 1992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LT/TXT/?uri=CELEX:31992R3932>(2017. 4. 12.).

<sup>22)</sup> Commission Regulation(EC) No 358/2003 of 27 February 2003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Text with EEA relevanc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3R0358>(2017. 4. 12).

of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에 대한 연구가 해당됨.

- 공동의 표준보험계약 조건 및 모델(the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 policy conditions)은 원보험계약의 표준적인 계약조건의 공동작성 및 배포, 자금적립요소를 포함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예시모델(models illustrating the profits)의 공동작성 및 배포에 한정됨.
- 특정 리스크의 공동인수는 보험회사 간 원보험폴 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 재보험폴의 설립과 운영에만 한정됨.
- 안전방재 및 보안장치의 시험 및 인정은 관련 장치의 기술적 사양서, 규칙 혹은 취급규정, 심사 및 승인을 위한 기준, 보수업자의 심사 및 승인이 해당됨.

■ 2010년에는 새로운<sup>23)</sup> 특정 리스크에 대한 공동인수풀(co(re)insurance pool)과 공동으로 자료편찬 통계표 작성·연구에 대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for joint compilations, tables and studies)을 일정한 요건<sup>24)</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017년 3월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 존속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sup>25)</sup>

- 공동의 표준보험계약 조건과 안전방재기기 인증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되었음.
  - 동 가이드라인은 표준보험 계약조건의 공동 작성에 대해 「EU 경쟁법」 제101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특정 리스크에 대한 공동인수풀의 운영조건은 다음과 같음.
  - ① 타당한 사전통지기간을 가지고 각 참가사업자가 제재를 받아 탈퇴할 수 있을 것, ② 풀 규칙이 참가사업자에 대해 풀의 인수대상이 되는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 풀을 통해 인수할 수 있을 것, 또는 다른 풀 이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
  - ③ 풀의 규칙이 EU의 특정지역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 또는 재보험에 대하여 풀 또는 참가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 ④ 협정이 보험의 보급이나 판매를 제한하지 않을 것

<sup>23)</sup> 제3차 IBER(267/2010/EU) 제1조 제6항의 새로운 리스크(new risk)는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위험으로 현행 보험상품의 확장, 개량, 대체를 할 수 없어 신상품개발을 하여 담보가 필요한 리스크를 말함.

<sup>24)</sup> European Union(2010), Regulations: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of 24 March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bd0c2721-9533-4364-b3bb-497284046f14/language-en>, 2017. 4. 12); 損害保險事業総合研究所(2010), 「欧米主要国における業務標準化等への共同の取り組みとその法的位置付けについて」, pp. 13~16.

<sup>25)</sup>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of 24 March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Text with EEA relevanc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0R0267\(2017.4.12\)](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0R0267(2017.4.12)).

- ⑤ 협정이 시장 또는 고객을 할당하지 않을 것, ⑥ 공동재보험폴의 참가사업자가 원수보험의 영업보험료를 협정하지 않을 것, ⑦ 폴의 영업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폴의 회원 또는 사업자가 동종시장에서 활동하는 별도의 폴의 회원이 아니거나 또는 영업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공동인수협정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관련 시장의 M/S를 제한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의 M/S에 관련 없이 3년 동안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표 1〉 공동인수협정의 적용 조건

구분		공동보험폴	공동재보험폴	유효기간
신리스크	A	M/S 무관	M/S 무관	3년
신리스크가 3년 경과한 경우	B	참가보험회사 M/S가 관련 시장의 20% 이하	참가보험회사 M/S가 관련 시장의 25% 이하	규칙실시기간 내 유효
	C	참가보험회사 M/S 20% 이하였으나 25% 이내까지 상승한 경우	참가보험회사 M/S 25% 이하였으나 30% 이내까지 상승한 경우	20%, 25%를 최초 초과 시부터 2년간
	D	참가보험회사 M/S 20% 이하였으나 그 후 25%를 초과한 경우	참가보험회사 M/S 25% 이하였으나 그 후 30%를 초과한 경우	25%, 30%를 최초 초과 시부터 1년간

자료: EU(2010),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of 24 March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Text with EEA relevance), pp. 6~7.

- 공동으로 수집한 통계표 편찬 및 공동의 위험보험료 작성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sup>26)</sup>
  - ①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동일 또는 유사 리스크에 대해 수년의 관찰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사고건수, 부보 보험금액, 최종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
  - ② 입수할 수 있는 통계의 상세내역을 포함한 보험수리상의 타당한 것일 것, ③ 안전율, 준비금의 운용수익, 관리비, 영업비, 납부금, 운용수익, 예상이익이 반영되지 않아야 함.

<sup>26)</sup> 공동으로 수집한 통계 및 위험보험료 산출(확률표) 및 연구는 ④ 관계하는 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 당사자도 특정하는 것이 없을 것, ⑤ 작성 및 배포 시에 이들을 구속하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선언이 포함될 것, ⑥ 영업보험료 수준을 시사하는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을 것, ⑦ 현재 영업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영업하지 않은 보험사업자도 포함)가 공동산정결과, 확률표, 연구결과의 복사를 요청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 질 것, ⑧ 공공안전을 위해 비공개를 정당화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산정, 확률표 및 연구결과의 복사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함.